

# '79 稅法改正과 外國의 事例

李 龍 煥

(全國經濟人聯合會 調查部 調査役)

## I. 머리말

不安定한 世界經濟는 79年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계속하여 混調를 보이고 있다. 가까운 時日안에 景氣가 回復되리라는 樂觀的 見解보다는 悲觀的 見解가 現實을 더욱 어렵게 생각되게끔 하고 있다.

世界經濟는 正常的인 經濟秩序의 現象보다 經濟의 歪曲現象이 一般化 되어가고 있다. 第2次 Oil shock, 달러가치의 不安으로 인한 Gold rush 등의 實物投機의 國際化, 世界의 主要 証券街에서 나타나는 株價의 急激한 浮沈現象 모 든것이 非正常的이다. 이러한 中에서도 世界各國은 인플레이션 退治, 物價의 安定 등 經濟秩序 回復을 위한 政策樹立에 苦心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같은 世界經濟情勢下에서 租稅政策은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가? 主要國家의 稅制改正 動向을 우리나라와 比較 살펴보고자 한다.

最近 우리나라를 비롯한 美國, 英國, 西獨 및 프랑스 등에서 取해지고 있는 租稅政策은 國別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一般的인 現象은 景氣浮揚과 에너지問題에의 對應, 財政赤字 解消를 위한 努力 등에서 共通點을 찾아 볼수 있다.

먼저 各國의 稅制改正 動向을 상세하게 열거하기 이전에 그 內容을 總括的으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韓 國 : 油價引上에 따른 所得稅의 輕減, 企業의 過多消費支出抑制등을 통한 實質所得의 減少 補填과 건전 消費風土 造成.

② 美 國 : 所得稅의 減稅(인플레이에 따른 實

質所得 減少補填이 目的), 企業減稅에 의한 景氣刺戟 및 에너지 對策.

③ 英 國 : 所得稅의 大幅減稅에 의한 景氣刺戟과 附屬稅·稅率引上 및 大幅的인 歲出削減등에 의한 財政均衡의 回復.

④ 西 獨 : 所得稅 減免, 營業稅 減稅를 中心으로 하는 景氣刺戟과 附屬稅率 引上등에 의한 財政均衡의 回復.

⑤ 프랑스 : 인플레이 우려때문에 所得稅 減稅를 必要 最少限으로 凍結시키는 한편 投資減稅등에 의한 景氣刺戟과 選擇的 增稅에 의한 財政均衡 回復.

⑥ 日 本 : 赤字財政의 健全化를 위한 揮發油稅등의 引上 課稅特例의 是正 및 縮少, 産業 轉換投資促進, 優良宅地供給 促進對策.

## II. 各國의 稅制改正 動向

### 1. 韓 國

#### 가) 油價引上和 所得稅 輕減

우리나라는 OPEC의 油價引上 影響으로 1979年 7月 1日부터 國內 揮發油 價格을 一時에 59%로 引上, 物價에 저지않은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한 勤勞低所得層과 零細事業者의 實質所得 補填을 위한 對策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理由에서 마련된 所得稅法의 改正은 다음과 같다.

① 月定給與額이 50萬원 以下の 勤勞所得者에게는 所得稅額의 30%를, 50萬원 超過者에게는 所得稅額의 20%를 一律的으로 輕減토록 하고 賞與에 대하여도 이에 따르도록 했다.

② 月定收入이 50萬원 以下の 事業所得者에게는 中間豫納稅額의 30%를 輕減하며

③ 이와같은 輕減措置는 1979年 7月 1日以後의 所得分부터 適用토록 했다.

#### 나) '79 稅法改正 要綱

1979年 年末 定期 国会에 上程·審議될 '79 稅法改正案은 所得稅率 引下를 통한 租稅負擔의 輕減, 証券市場浮揚을 위한 稅制支援, 企業의 過多消費支出抑制을 위한 稅制措置등의 內容을 담고 있다.

#### (1) 所得稅 및 相續稅 稅率의 引下

지난해 紙上配當稅制의 廢止등으로 인한 지나친 稅負擔의 調整 및 物價上昇으로 인한 低所得層의 保護라는 面에서 稅率引下와 人的控除額의 一部 調整이 있었다.

이를 보면 現在 最低 8% (防·住包含 9.4%) ~ 最高 70% (防·住包含 89.25%)의 稅率構造를 最低稅率을 6% (防·住포함 7.05%) ~ 最高稅率을 62% (防·住포함 79.05%)로 引下 했으며 現在 17段階의 稅率構造는 그대로 維持토록 했다. 그러나 防衛稅·住民稅를 포함한 最高稅率 79.05%는 아직도 높은 水準이라 할수 있다. 世界에서 所得稅率이 가장 높다는 英國이 個人의 創意的 活動을 고취하고 企業經營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하여 最高稅率을 83%에서 60%로 引下한 점은 매우 시사적이라 하겠다.

人的控除에 있어서는 基礎控除만을 月 5,000원 引上한 25,000원으로 하여, 5人家族 基準控除額이 月 13萬원이 13萬 5,000원으로 調整됐다.

한편 相續稅에 있어서는 該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名目價値上昇에 따른 것을 감안하고 適正課稅에 의한 相續稅의 迴避를 防止하기 위한 觀點에서 改正案을 마련했다.

相續稅率도 所得稅率 水準에 맞추어 現行 10% (防衛稅포함 12%) ~ 75% (防衛稅포함 90%)를 7% (防衛稅포함 8.4%) ~ 67% (防衛稅포함 80.4%)로 引下했으며 稅率段階는 15段階를 그대로 使用토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所得稅가 非課稅 되어오던 芸術創作所得에 대하여는 月 50萬원까지 特別控除을 許容했으며 여기에 勤勞所得控除을 除外한 5人家族 基準 人的控除額 月 95,000원을 합하

면 實所得控除額은 月 59萬 5,000원까지 非課稅가 된다.

#### (2) 証券市場 浮揚對策

##### ① 資產再評價準備金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配當 非課稅

78年 8月 以後 沈滯한 証券市場에 活性化를 불어넣기 위한 方案으로 지금까지 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의 資產再評價無償株配當에 대한 別도의 稅率을 適用分離課稅하던 것을 止揚, 上場·非上場法人의 区分없이 非課稅토록 했다. 그동안 資產再評價 無償株配當에 대하여는 理論上 批判이 있었다. 即 資產再評價는 企業에 新規資金을 流入시키지 않고 단지 장부가액만을 引上시킴으로 再評價額을 資本에 轉入할 경우 一株當 配當可能收益은 低落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一般配當과 같이 所得稅를 賦課한다는 것은 「所得있는 곳에 課稅한다」는 原則에도 一致하지 않으며 또한 이는 資產再評價稅 納付와 함께 二重課稅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될때 課稅時點에서 보면 株主는 오히려 損失을 입게 된다는 모순이 제기 되고 있었던 것이다.

企業會計原則 第 5節·第 3 有價証券의 評價에서는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의한 株式의 取得은 資產의 增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어 課稅所得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稅法改正案의 資產再評價積立金의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의 非課稅는 租稅理論 및 企業會計原則에 調和를 기한 것이라고 하겠다.

##### ② 機關投資者 受入配當金 益金不算入

지금까지 銀行이나 保險会社등의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으로 부터 받는 受入配當金에 대하여는 全額 課稅하여 오던 것을 改正案에서는 非課稅토록 했다.

##### ③ 增資 所得控除時限 延長

企業의 自己資金 比率을 높여 財務構造를 改善하고 銀行利子支拂등에 대한 企業會計上的 損金容認에 따른 借金經營과의 不利를 補填하기 위하여 採択한 增資所得控除制 (增資額의 16% 所得控除)는 增資時限과 控除時限이 각각 79年 末과 80年 末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1年間씩 延

長했다.

#### ④ 証券貯蓄 稅額控除 新設

中産層에 대한 新規貯蓄誘引을 提供하고株式投資層의 底辺擴大을 通하여 証市의 活性化를 기하고자 채택된 証券貯蓄稅額控除制는 1981年 12月31日까지의 時限法으로 규정하고 있다. 同貯蓄의 內容을 보면 対象은 月給與 100萬원以下 勤勞者로 하고 給與額의 30%(最下年 120萬원)를 每月 貯蓄하면 貯蓄額의 10%를 稅額控除하여 주도록 했다.

#### (3) 企業의 過多消費支出抑制

現在 ① 100萬원, ② 資本金(50億 韓元)의 2%, ③ 外形의 0.4%의 合計額(①+②+③)을 企業의 接待費限度로 認定해오던 것을 300萬원, 資本金(50億 韓元)의 2%, 外形의 0.2%의 合計額으로 縮少했다.

企業의 接待費 限度의 縮少와 같은 觀點에서 지금까지 限度없이 認定해오던 승용차의 油類費 支出에 대하여는 正常 營業活動에 支障이 없는 水準을 損費로 認定토록 하고 그 限度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에 委任했다.

#### (4) 其他 改正內容

위에서 記述한 以外の 主要 改正內容은 油價 引上에 따라 市内버스 事業者의 收益惡化를 덜어주기 위한 對策으로서의 6大都市 市内버스 事業者에 대한 法人稅 減免과 地下鉄 建設 支援, 住宅建設業者의 宅地確保 支援, 土地債權의 租稅物納許容, 船舶等 輸入에 대한 附加價值稅 免除 등의 內容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優秀發明의 促進과 技術開發意慾의 鼓吹를 위하여 優秀發明에 따른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하고, 其他所得의 分離課稅 범위를 넓혀 지금까지 年 36萬원까지의 其他所得에 限하여 25%의 分離課稅 하던 것을 年 120萬원까지로 擴大하여 知識人의 社會傳受教育의 機會을 넓혀 주었다.

## 2. 美 國

### 가) 1978年 歲入法

1978年의 歲入法은 總額 214億 달러의 減稅를

通한 인플레이抑制 및 景氣回復을 위한 租稅政策과 租稅體系의 整備를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同法은 原則적으로 1979年 1月 1日부터 適用키로 했는데 그 主要內容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個人所得稅 減免

① 종래 一般稅額控除와 所得控除가 同時에 認定되던 것을 고쳐 人的控除(所得控除) 하나로 單一化 했고, 이에 따라 종전 各項目 人的控除額을 750달러에서 1,000달러로 引上했다.

② Zero(零) 稅率 最高 限度額을 아래와 같이 引上했다.

① 共同申告書를 提出한 夫婦者 : 3,200달러  
→ 3,400달러

② 個別申告書를 提出한 夫婦者 : 1,600달러  
→ 1,700달러

③ 獨身者 : 2,200달러 → 2,300달러

#### ③ 稅率段階의 縮少

25個의 稅率段階를 夫婦者는 15段階로, 獨身者는 16段階로 縮少하고 中低所得層의 所得者에게 輕減혜택이 가도록 調整되었다.

#### ④ 政治獻金에 關係한 控除限度額의 調整

公職후보자 또는 政黨등의 政治獻金에 대하여는 종래 所得控除(最高 100달러) 또는 獻金額의 50% 相當額의 稅額控除(最高 25달러)가 認定되고 있지만 이를 改正 現금액의 50%, 稅額控除(最高 50달러)로 單一化했다.

⑤ 이밖에도 종래 인정되었던 휘발유등에 대한 地方稅의 所得控除制는 廢止했다.

#### (2) 企業減免

##### 1) 法人稅率의 引下

最高稅率 48%를 46%로 引下함과 同時에 普通稅와 附加稅로 区分하여 適用하던 稅率을 廢止하고 <表-1>의 新稅率에 따르도록 했다.

法人稅率 調整內容

<表-1>

課稅所得	稅率
25,000달러 以下	17%
25,000달러 超過 ~ 50,000달러 以下	20%
50,000 " ~ 75,000 "	30%
75,000 " ~ 100,000 "	40%
100,000 " -	46%

## 2) 投資稅額 控除制度의 擴大

### ① 10%控除率의 固定化

종전까지 適格投資에 대하여는 投資額의 10%를 稅額控除容認하고 1981년부터는 7%로 引下適用키로 하였으나 이번 改正으로 다시 10%로 還元했다. 또한 投資促進을 위하여 控除限度額을 廢止하고 対象資産을 擴大하며 特別償却의 범위를 넓혔다.

### 3) 雇傭稅額控除制度의 改正

지금까지 一般적으로 認定되어 오던 雇傭稅額控除制度를 廢止하고 새로이 身體障害者중, 特定人의 雇傭促進만을 目的으로 하는 雇傭稅額控除制度를 創設했다.

### 4) 財産所得課稅의 改正

#### ① 個人에 대한 長期財産所得의 選擇課稅 廢止

종래 財産所得의 50%를 他의 所得과 合算하여 課稅, 또는 一定方式에 의한 分離課稅를 選擇토록 하는 課稅方式을 廢止하고 長期財産所得에 대하여는 同所得의 60%를 控除한 殘額을 通常所得과 合算하여 綜合課稅토록했다.

#### ② 法人에 대한 財産所得課稅의 調整

法人의 財産所得에 대하여 他의 所得과 合算한 法人稅率에 課稅, 또는 一定比例稅率에 의한 分離課稅의 選擇의 課稅方式에는 變함이 없지만 分離課稅의 경우 比例稅率을 종래 30%에서 28%로 引下했다.

### (3) 에너지 節約을 위한 租稅政策

1978년 11월에 確定된 美國의 에너지 法은 에너지 節約, 에너지 代替 및 新에너지 開發을 目的으로 하는 政策內容을 集約한 것이나 同法은 天然가스 價格規制法에 에너지 節約法, 電力料金 改正法, 産業用燃料의 石炭으로의 轉換促進法 및 에너지 課稅法의 5個部門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는 에너지 課稅法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a) 휘발유 浪費車稅의 新設

燃料效率이 一定基準 以下の 車輛製造業者에 대하여 아래의 稅率에 따라 80年型 車輛부터 課稅토록 했다.

#### b) 個人 住宅의 断熱工事 등에 대한 稅額 控除 制度 新設

##### ① 個人住宅의 断熱工事 등에 대하여는 그

## 연료 효율에 따른 課稅額

〈表-2〉

燃料效率(마일/갤론)	課稅額(달러)
14以上~15未滿	200
13 " ~14 "	300
- ~13 "	550

費用의 最初 2,000달러까지는 15%의 稅額控除를 許容하고

② 太陽에너지 이용장치, 또는 그 購入費用에 대하여는 最初 2,000달러까지는 30%의 稅額控除를, 2,000달러 超過 10,000달러 以下는 20%의 稅額控除를 認定했다.

#### c) 割増投資稅額 控除制度의 新設

에너지 節約裝置, 太陽에너지 利用裝置, 廢棄物 再利用裝置 등의 取得費用에 관하여는 通常의 10% 投資稅額控除外에 10%의 投資稅額控除를 追加 認定했다.

#### d) 超過利潤稅 新設 提案

今年 4월에 發表한 美國의 新에너지 政策은 國內產 原油에 대한 價格統制 철폐와 이에따라 發生하게 되는 石油企業의 지나친 利潤抑制을 위한 超過利潤稅의 創設이었다. 그 內容은 石油企業의 利潤에 관하여는 通常의 法人稅外에 稅率 50%의 超過利潤稅를 1980年 1月1日 부터 課稅하는 것으로 國會의 審議中에 있다.

### (4) 附加價值稅 導入에 관한 論議

附加價值稅의 導入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一般的인 主要原因은 財政收入의 改善에 있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美國에서도 最近에는 이에 대한 導入의 論議가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다. 同制度 導入에 대한 理由를 보면

① 好況期, 不況期를 통하여 所得보다는 消費쪽의 變動幅이 적기때문에 附加價值稅는 所得稅 등의 직접세에 比하여 比較적 安定的인 歲入을 얻을수 있고

② 現行 所得稅 및 法人稅가 個人的 근로의 務 및 適正投資를 沮害하는 生産沮害的인데 대하여 附加價值稅는 그와같은 生産沮害의 效果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 3. 英 國

英國의 1978年 歲入法에서는 所得稅 基本稅率

을 34%에서 33%로의 引下 및 稅率段階의 改正이 있었다. 이에 따른 減稅規模는 初年度 4.45억 파운드, 그 다음 해에는 5.2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國民保險料附加金の 引上으로 補填토록 했다.

1979년의 第1次 歲入法에서는 所得稅法상의 子女控除制를 廢止했다. 英國에서는 종전 所得稅法상의 子女控除와, 社會保障給付의 一環으로서의 兒童手当의 支給等, 二元的으로 運用해 왔지만 1979年 4月 以後로는 이를 兒童手当으로 一元化했다.

1979年度 第2次 歲入法에서는 所得稅의 大幅 減稅 및 附加價值稅의 增稅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稅制改革案을 마련했다. 이 法案에서 의 목적으로 한 것은 所得稅의 減稅를 통한 個人의 創意力과 勤勞意慾을 賦與하여 沈滯한 英國經濟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財政歲入의 減少는 附價稅의 增收 및 大幅의 歲出削減으로 補填토록 하고 있으며, 同時에 인플레이션 對策으로 公正金利의 引上 通貨供給의 抑制等 金融措置도 發表했다.

以上에서 다룬 내용은 國會에서 通過하지 않은 政府案이지만 國會에서도 大規模의 修正은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稅法 改正案의 具體的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所得稅 減免

#### (1) 控除額의 引上

基礎控除와 老年人控除의 控除限度를 <表-3>과 같이 引上하고 老年人控除의 適格所得制限도 4,000파운드에서 5,000파운드로 引上했다.

#### 人的控除額의 調整內容

<表-3> (단위: 파운드)

項 目	現 行	調整內容
基礎控除		
獨身者	985	1,165
夫婦者	1,535	1,815
老年人控除		
獨身者	1,300	1,540
夫婦者	2,075	2,455

#### (2) 稅率의 引下

英國의 所得稅率 累進構造는 最低 33%(基本

稅率) 最高 83%로 西歐에서 가장 높은 稅率構造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大幅的으로 輕減하여 基本稅率은 3%로 最高稅率은 무려 23%나 낮은 60%로 引下 調整했다.

改正後의 所得稅率 構造를 보면 <表-4>와 같다.

### 所得稅率 調整內容

<表-4> (單位: 파운드)

課 稅 所 得		稅 率 (%)
超過	以下	
0	~ 750	25(輕減稅率)
750	~ 10,000	30(基本稅率)
10,000	~ 12,000	40
12,000	~ 15,000	45
15,000	~ 20,000	50
20,000	~ 25,000	55
25,000	~	60

#### 나) 法人稅의 輕減

法人稅의 減免은 주로 中小法人에 대하여 輕減惠扱이 가도록 했다. 이를 보면 우선 輕減稅率을 適用받을 수 있는 年間 利潤限度額의 基準을 50,000파운드에서 60,000파운드로 引上하고 同時에 限界控除가 適用되는 利潤限度額도 85,000파운드에서 100,000파운드로 引上했다. 또한 所得稅의 基本稅率 引下와 連動하여 豫納法人稅의 稅率을 33/67에서 3/7으로 引下했다.

#### 다) 石油收入稅의 增稅

北海油田 原油生産의 利潤에 課稅되는 石油收入稅에 관하여는 稅率을 45%에서 60%로 引上하고, 아울러 免稅點도 年間生産量 100萬 톤에서 50萬톤까지로 낮추는 등 課稅를 강화했다.

#### 라) 開發用地稅의 減免

公共事業 및 都市開發등의 結果 얻어지는 私有土地의 開發利益에 課稅하는 開發用地稅는 稅率이 종전에 66% (10,000파운드~15,000파운드에 대하여)와 80% (15,000파운드 초과)의 2段階로 적용하던 稅率을 50,000파운드 초과 60%로 單一化했다.

#### 마) 資產移轉稅의 減免

우리나라의 相續·贈與稅와 비슷한 資產移轉稅는 지금까지 輕減措置의 對象이 되던 自由裁

量信託의 輕減期間을 새로이 2年間 延長하는 것으로 改正했다.

**바) 附加價值稅의 增稅**

所得稅에서의 大幅的인 輕減措置와는 대조적으로 附加價值稅에서는 오히려 稅率을 引上했다. 그 內容을 보면 종래 8%의 標準稅率과 12.5%의 割增稅率의 複數稅率制를 15%의 單一稅率制로 引上 改正했다. 이와같이 附加價值稅率을 大幅的으로 引上한 理由는 所得稅의 減稅에서 發生되는 歲入의 減少를 附屬稅에서 補填하려는 措置로 풀이된다.

**사) 炭化水素油稅의 增稅**

에너지 節約의 정책에 따라 휘발유세등의 稅率을 <表-5>와 같이 引上했으나 家庭에서 使用하는 난방유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1겔론당 1펜스를 維持토록 했다.

**油類稅 調整內容**

<表-5> (單位: 펜스/겔론)

油 稅	稅 額	
	現 行	改 正
揮 發 油	30	37
輕 油	35	42
重 油	2.5	3.0
LPG (自動車用)	15	18.5

**4. 西 獨**

1978年 「본」에서 開催되었던 先進國 頂上會談에서는 長期的 世界不況을 打開하기 위하여 各國마다 具體的인 景氣對策을 提示, 그 實現을 約束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따라 開催國인 西獨에서는 GNP의 1%를 景氣刺戟策으로 使用할 것을 宣言했었다. 이 公約을 實現하기 위하여 西獨政府는 同年 7月에 景氣對策을 發表했고, 同年 11月에는 稅制改正으로 景氣刺戟策을 뒷받침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景氣刺戟策은 一応 景氣回復의 效果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財政의 赤字擴大를 가져왔다. 이 결과 1980年度 豫算에서는 安定的인 景氣回復과 아울러 段階的으로 財政의 健全化를 達成하는 일이 第一의 政

策課題로 提示되었다.

以下 1978年 稅制改正에서 부터 最近까지의 稅制改正에 관해서 略述한다.

**가) 1978年 稅制改正法(所得稅法, 營業稅法, 附加價值稅法, 聯邦兒童手当法)**

本法은 前述한 「본」 頂上會談에서의 公約에 따라 西獨政府가 78年 7月에 決定한 政策中 稅制改正에 關係한 部分만을 담은 것이다. 參考로 景氣對策과 관련된 豫算을 보면 規模는 當初 12.5億 마르크였으나 最終的으로 確定된 金額은 約 135億마르크로 높아졌다.

**1) 所得稅 減免**

**(1) 累進段階의 稅率調整(1979年 1月 1日以後 실시)**

종전의 所得稅率構造는 各段階의 限界稅率에 해당되는 所得者에게는 소위 「稅率점프」라고 호칭되는 急激한 租稅負擔을 가져오는 課稅의 不公平 即 租稅衡平의 問題가 提起되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와같은 急激한 稅率의 上昇을 排除하고 連續的인 上昇의 累進構造로 改編코자 한 것이 있었다.

**(2) 제로(零) 稅率 適用 最高 限度額의 引上 (1979年 1月 1日以後 實施)**

제로稅率 適用 最高 限度額을 獨身者는 3,300 마르크에서 3,690 마르크로 夫婦者의 경우는 6,600 마르크에서 7,380 마르크로 引上했다.

**(3) 兒童養育費 控除의 新設(1980年 1月 1日以後 실시)**

18歲 未滿의 子女 1人에 대하여는 最高 600 마르크(夫婦合算課稅의 경우는 最高 1,200 마르크)까지 어린이들의 養育에 지불한 費用에 대하여는 控除를 認定하는 養育費控除制를 採択했다. 이에 따라 종래 家事 使用人에게 支出한 費用의 控除를 許容하던 控除制度는 폐지했다.

**(4) 生活費補助控除(1979年 1月 1日以後 실시)**

離婚 또는 繼續的으로 別居하고 있는 配偶者에게 支出하는 生活費補助는 年間 9,000 마르크 限度內에서 所得控除를 認定했다.

**(5) 保險料控除의 引上(1980年 1月 1日以後 實施)**

支拂保險料, 建築貯蓄金庫拂入金에 대하여는 最高 2,100 마르크(夫婦合算課稅의 경우는 4,200

마르크)까지 所得控除를 認定하고 이중 保險料에 대하여는 追加로 1,500마르크(夫婦合算課稅의 경우는 3,000마르크)까지 認定했다. 이번 改正에서 이 追加的 保險料 控除額을 1,000마르크 引上하여 最高 2,500마르크(夫婦合算課稅의 경우 5,000마르크)까지 控除額을 높였다.

## 2) 營業稅 減免

營業稅는 收益 資本 支拂勞賃을 課稅 標準으로 하고 이를 각각 營業收益稅, 營業資本稅, 勞賃總額稅로 호칭하고 있다. 그중 營業資本稅와 勞賃總額稅는 企業의 收益如何와는 無關係한 稅目이라는 면에서 批判을 받아 왔다. 即 企業이 赤字의 경우에도 稅金을 내야 하는 것은 實質所得이 없는데도 稅金을 내는 모순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부터 營業稅 그 自体가 法人稅와 重複된다는 一部の 批判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의 營業稅法의 改正은 위와 같은 점등을 고려하여 勞賃總額稅는 1980年 1月 1日 以後 廢止하고, 營業資本稅에 있어서는 基礎控除額을 年 6萬마르크에서 12萬마르크로 引上하는 한편 最高 5萬마르크까지의 長期債務控除制를 新設했으며, 이는 1980年 1月 1日 부터 施行키로 했다.

## 3) 附加價值稅 稅率의 引上

所得稅法등의 減稅에 의한 歲入減少의 一部를 補填, 財政健全化를 이룩하기 위하여 1979年 7月 1日 以後 附加稅의 稅率을 종래 標準稅率 12%를 13%로, 輕減稅率 6%를 6.5%로 引上했다.

## 4) 投資補助金 給付率의 引上

稅制改正과 有關한 投資促進策을 보면 1973年 當時 景氣過熱에 따라 引下調整했던 投資補助金의 給付率을 다시 引上했다. 一般投資에 대하여는 投資額의 7.5%를 補助金으로 주던 것을 10%로, 研究開發投資에는 7.5%에서 20%로 大幅 引上하고 이를 1978年 1月 1日 부터 溯及適用키로 했다.

# 5. 프랑스

프랑스는 1976年 下半期 以後 內的으로는 인

플레이어를 위한 緊縮基調의 維持와 雇傭增進을 目的으로 하는 景氣回復策을 實施하고 外的으로는 貿易收支의 改善, 「프랑」화의 安定을 위한 經濟運營을 堅持해왔다. 그 결과 外的으로는 1978年에 貿易收支의 대체적인 均衡을 보였고, 「프랑화」시세도 安定되는등 一応 安定의 成果를 달성했지만 內的으로는 여전히 인플레이에 시달리고 또한 國內 經濟活動의 停滯가 反映, 失業問題가 시급히 解決되어야할 難題로 提起되었다.

이런 점에 留意, 프랑스 정부는 1979年度 78年度에 이어 70年 以來 繼續해온 均衡豫算原則을 離脫하여 雇傭促進을 통한 景氣回復의 저변 확대 및 緊縮基調를 통한 인플레이 억제책으로 赤字豫算을 編成하는 한편 所得稅, 法人稅, 附加稅의 一般的인 稅目에서의 增稅를 留保하고 石油產品 內國消費稅등에 限하여 增稅를 기하는 등 景氣回復을 위한 慎重한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 가) 1978年度 第3次 修正豫算法

1978年 12月의 第3次 修正豫算法은 1977年의 EC 「去來高稅에 관한 加盟國의 調和에 관해서의 第6次 指令」의 內容에 따라 附加價值稅에 관한 部分的인 改正이 있었다. 그 內容을 보면 課稅範圍는 「商工業의 性格을 갖는 活動에 관한 去來」에서 「有償에 의한 動産의 讓渡 및 서비스의 提供」으로 擴大하고,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종래 원칙적으로 非課稅 되었던 自由職業者등을 課稅對象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納稅義務者에게는 稅金計算書의 發行을 義務化한 점등이 改正의 重要한 部門이다.

### 나) 1979年度 豫算法

物價上昇 및 인플레이 對策으로 所得稅의 減免은 예년과같이 稅率의 一部調整과 人的控除額 및 免稅點의 引上으로 行해졌다.

稅率의 調整은 獨身者의 경우 제로稅率適用 最高限度額을 7,250프랑에서 7,925프랑으로 引上하였고 이에따라 稅率段階의 上向調整이 있었다. 必要經費 控除後의 免稅點은 65歲 未滿에서는 16,800프랑, 65歲 以上에서는 18,300 프랑으로 引上되었다.

다음 소득세의 少額不徵收點을 150프랑에서 167프랑으로 引上하고, 給與所得者에 새로이 勤

勞獨身者控除를 新設하는 外에 障害者控除, 老年者控除등의 控除額의 引上이 있었다.

企業減稅로는 新設 中小企業에 關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輕減하는 措置가 取해졌다.

#### 다) 有價証券에 關계한 財産所得 課稅法

1976年 7月의 財産所得課稅法은 財産所得中 讓渡所得을 部分的인 財産所得에만 課稅하고 有價証券에 對한 課稅는 當시 遲延한 株式市場에 의 부양조치라는 理由에서 그 適用을 1979年 1月로 延期하였다. 그래서 1978年까지 다시 有價証券에 關한 課稅에 對한 再檢討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78年 7月에 새로운 「有價証券에 關계한 財産所得課稅法」이 制定되고 同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토록 했다.

本法에 의하면 상시 行해지는 有價証券의 市場去來에 關계한 財産所得에 對한 課稅는 有價証券으로부터의 所得이 納稅者의 他課稅所得의 總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綜合課稅하고, 同所得이 納稅者의 他課稅所得의 合計額보다 작은 경우에는 30%의 分離課稅(選擇에 의한 綜合課稅)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其他 有價証券에 關계한 財産所得에 對하여는 年間 讓渡額이 15萬프랑을 超過하는 경우에만 15%, 分離課稅토록 했다.

#### 라) 株式購入促進法

1978年 7月에 企業의 過剩借入을 줄이고 自己 資金比率을 높여 企業의 財務構造를 改善하며, 貯蓄을 投資에 연계시키는등의 一련의 施策을 集約한 「貯蓄을 企業에 充當하기 위한 法律」(內容으로는 「株式購入促進法」)을 制定했다.

本法에 의하면 個人의 株式購入額이 讓渡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部分에 對하여는 一定限度內에서 所得控除를 許容했다. 即 이는 基本 5,000프랑에 最初의 扶養子女 2人까지는 1人當 500프랑, 3人以後는 1人當 1,000프랑을 加算한 額을 控除해주는 制度이다.

株式購入에 對한 所得控除와는 大조적으로 銀行預金利子등에 對한 利子所得의 源泉分離稅率을 33%에서 40%로 引上하여 間接적으로 株式購入을 유도했다.

다음 企業의 增資促進策으로 增資를 위한 株

式發行에 對하여는 支拂配當損金算入制度의 適用을 延長하는 한편 準備金의 資本轉入에 對한 登錄稅의 輕減등이 行해졌다.

#### 마) 投資減稅法

1979年 정부가 제안한 投資減稅法案은 石油 價格의 上昇이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影響을 완화하고 雇傭의 促進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그 內容은 1979年 12月31日까지 資産再評價를 行한 企業에 對하여는 對前年比 投資增加額의 10%를 限度로 하여 減稅를 하는 외에 國土開發 科學技術研究投資의 對象資産에 對한 特別償却을 認定하는 등의 內容을 담고 있다.

## 6 日 本

日本은 累積되어온 財政赤字의 縮少와 油價 引上에 따른 對策으로서 揮發油稅등의 稅率引上, 社會保險診療報酬課稅의 特例是正, 租稅特別措置의 整理合理化, 交際費課稅強化와 産業 轉換投資 및 優良地地供給등을 돕기 위한 措置로서 必要한 稅制改正을 提出했다.

#### 가) 油類稅의 引上

國·地方을 통한 艱難한 財政難의 解消와 第 8次 道路整備 5個年計劃에 必要한 財源確保등의 觀點에서 揮發油稅 및 地方道路稅의 稅率을 아래와 같이 引上함과 아울러 그 適用期限을 1983年 3月31日까지 延長했다.

이밖에 航空機의 燃料세율도 kl當 13,000円에서 26,000円으로 100% 引上했다.

#### 油類稅額 調整 內容

〈表-6〉

(單位: 円/kl)

稅 目	現 行	改 正
揮 發 油 稅	36,500	45,600
地 方 道 路 稅	6,600	8,200

#### 나) 租稅特別措置의 整理 合理化

##### 1) 社會保險診療報酬의 課稅特例是正

지금까지의 社會보험진료보수의 課稅特例는 1978年度까지 適用토록 하고 1979年以後부터는 社會保險診療報酬에 關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金額은 그 收入金額에 따라 課稅토록 했다.



社会保險診療報酬 課稅의 調整內容

(表-7)

(單位 萬円/%)

收入 金額	率
2,500 以下	72
2,500 ~ 3,000	70
3,000 ~ 4,000	62
4,000 ~ 5,000	57
5,000 起過	52

2) 有價証券 讓渡差益의 課稅 強化

有價証券의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항목들을 새로이 課稅對象에 포함시켰다.

(1) 한사람 명의로 年間 20萬株 以上株式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

(2) 상당수의 株式買入이 있고 또는 그와 유사한 株式의 買入으로써 証券去來所가 指定한 명義의 株式을 20萬株以上 買入함으로써 發生한 讓渡差益

3) 租稅特別措置의 合理化

(1) 特別措置의 廢止

다음의 特別措置는 廢止했다.

- ① 民生관련설비의 特別償却
- ② 廢棄物施設에 대한 償却特例
- ③ 中小企業合併에 따른 清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④ 特定機械設備등을 取得한 경우의 稅額 控除

(2) 所得控除額의 縮少

- ① 技術등 海外去來에 대한 所得의 特別控除制度中 著作權에 대한 控除率은 20%에서 10%로 引下했다.
- ② 協同組合등의 留保所得 特別控除制度中 出資金額 1億円을 超過하는 組合의 累積留保金額이 2億円을 超過할 때에는 그 控除率을 1/4에서 1/5로 引下하고 適用期間을 2年 延長했다.

(3) 特別償却 制度

石油貯藏施設, 産炭地域의 建物에 대한 償却率을 종전보다 각각 ½로 줄였고 低開發地域에서의 工業用機械, 中小企業用機械등의 特別償却制度에서는 取得價額의 最低限度를 700萬円에

서 800萬円으로 引上했다.

또한 公害防止用設備, 廢棄物再生處理設備, 省에너지設備, 船舶 및 無公害化 生産設備등에 대하여는 特別償却의 對象範圍를 縮少시켰다.

(4) 準備金·充當金 制度

① 準備金制度의 調整內容을 보면 價格變動準備金은 商品의 경우에는 積立率을 引下했으며 有價証券의 경우에는 同制度를 廢止했다.

中小企業등의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은 資本金 1億円 超過 10億円 以下の 法人에게는 積立率을 1.15%에서 1.12%로 引下했고 海外投資損失準備金中 新開發地投資의 경우에는 그對象地域을 縮少 調整했다.

② 充當金制度에서는 法人의 貸損充當率을 <表-8>과 같이 낮추고 積立限度額의 計算에 대하여는 法定積立率과 貸損率과의 方法中 摺一 適用토록 했다.

貸損 充當金 積立率 調整 內容

(表-8)

業 種	現 行	改 正
都売業 및 小売業	$\frac{20}{1000}$	$\frac{16}{1000}$
割賦販賣에 의한 小売業	$\frac{25}{1000}$	$\frac{20}{1000}$
製 造 業	$\frac{15}{1000}$	$\frac{12}{1000}$
其 他 事 業	$\frac{12}{1000}$	$\frac{10}{1000}$

4) 交際費課稅의 強化

交際費 課稅를 다음과 같이 改正했다.

(1) 損金算入限度額 計算의 基礎가 되는 定額控除額은 資本金 1,000萬円 超過 5,000萬円 이하의 法人에 있어서는 年 400萬円에서 300萬円으로, 資本金 5,000萬円 超過의 法人에 대하여는 200萬円으로 各各 引下하고

(2) 資本金 一定比率( $\frac{25}{100,000}$ )을 損金算入額으로 하던 것은 廢止했다.

5) 産業轉換投資 促進稅制

特定不況産業, 緊急히 産業構造改編이 要求되는 中小企業등에 대하여는 投資額의 10% (稅額의 20%를 限度로 함)를 稅額控除를 許容하고 控除限度 超過額에 대하여는 3年間에 걸쳐 移越使用토록 했다.

이밖에도 土地 住宅供給을 위한 稅制支援, 老人 및 障害者를 위한 支援등의 改正이 있었다.

### 6) 一般消費稅에 대한 論議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制와 비슷한 一般消費稅가 日本에서도 赤字財政의 解消策으로 그동안 慎重히 研究되어 왔으며 最近에는 來年(1980年) 施行을 목표로 諸般의 準備가 進行中에 있다.

## Ⅲ. 結 語

一般的으로 物価의 安定 雇傭의 促進 貿易收支의 改善, 産業構造改編등을 위한 政策의 支援 手段에는 크게 나누어 金融政策과 租稅政策을 포함한 財政政策의 두가지가 政策支援變數의 根幹이 되고 있다.

本稿에서 다른 各國의 稅制改編에 관한 動向도 이런 意味에서 보면 政策變數로서의 部分的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때문에 이와같은 租稅政策은 財政의 支出政策, 나아가 金融政策과 함께 相互補完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租稅政策만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多様な 經濟狀況에 있어서 效果의인 政策運用은 바랄 수 없게 된다.

원래 租稅政策이란 公平課稅를 통한 所得의 再分配가 그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租稅政策이라는 意味는 어떤面에서는 「公平課稅」라는 뜻과는 오히려 相反되는 意味를 갖기도 한다. 그 理由는 당해 국가의 經濟政策 우선순위에 따라서 政策支援의 必要性이

存在하게 되고 지원목의 要求도 相異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記述한 各國의 租稅政策을 보더라도 그 內容에는 公平課稅를 위한 努力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公平課稅와는 거리가 먼 租稅의 減免事項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緣由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各國 稅制改編과정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을 보면 所得稅와 法人稅등의 直接稅部門에서는 減稅를 행하고 反面 附加價值稅등의 間接稅에서는 增稅를 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二律背反的인 租稅政策은 인플레이션으로 減少된 實質所得의 回復과 消費節約을 誘導하는 肯定的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現在의 財政調達方式이 「느끼는 稅金에서 느껴지지 않는 稅金」으로 轉換해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곧 國民의 租稅抵抗을 회피하고도 財政收入은 達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稅制의 支援에 있어서는 各國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各國 共히 戰略的인 部門에는 획기적인 稅制支援措置가 따르고 있다. 美國의 景氣振作을 위한 法人稅率의 引下 및 投資稅額控除 擴大, 英國의 침체한 經濟를 活性化하겠다는 政府의 意志를 反映한 所得稅의 大幅輕減, 西獨의 研究開發投資에 대한 投資補助金의 획기적인 引上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例에서 볼때 우리나라도 高度의 技術開發이나 海外資源開發投資 등의 戰略的인 部門에 대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支援措置가 期待된다 할 것이다.

## 연말연시의 일시적 낭비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